

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신고방법 안내(1차)

(2022.2.8. 자원관리부)

□ 신고방법

- **요양기관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진행**
- **최초신고: (1)→(2)→(3)→(5)순서로 진행**
 - ※ 운영시작일자 2022.02.08.부터 가능
 - ※ PCR 가능 기관: 최종제출 화면 전달사항 란에 작성 **必**
- **변경·종료신고: (1)→(2)→(4)→(5)순서로 진행**
 - ※ 운영일자, PCR 가능 여부 등 운영현황 변경 및 종료 시 반드시 재신고
 - ※ 청구 전 특수운영 현황조회에서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현황 반드시 확인
 - 경로: 현황신고·변경 > 특수운영현황 > 특수운영 지정현황 조회 > 특수운영 현황 조회
- **2차 시스템 오픈(2.28.) 시 기 신고기관 포함 모든 기관들이 본 시스템을 통해 상세내역(운영형태 등) 재신고**

(1) ①현황신고·변경 > ②특수운영현황 신고 > ③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신고 클릭



(2) '신규신고' 클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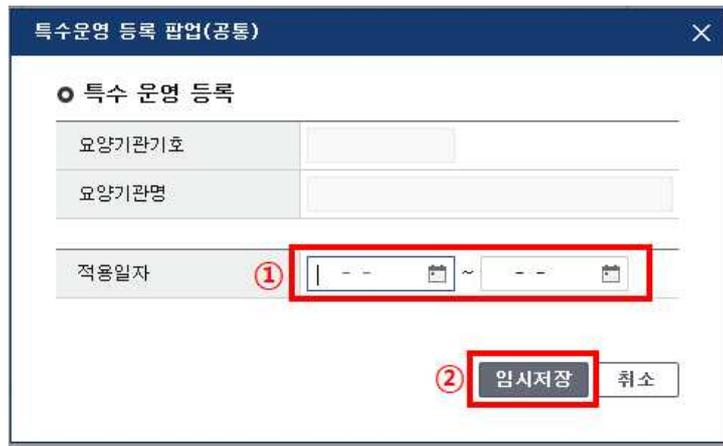
(3) 최초신고인 경우

(3-1) '신규등록' 클릭



(3-2) ①적용일자*입력 ②임시저장 클릭

* 시작일은 실제 운영 시작하는 일자, 종료일은 9999-12-31입력



(4) 변경·종료신고인 경우

(4-1) '수정' 클릭



(4-2) ① 변경일 입력 후 ② 임시저장 클릭

(5) ① '최종제출' 탭 클릭하여 이동

(5-1) ② 전달사항에 PCR 가능 여부 작성, ③ 작성자 정보등록 후

④ 최종제출 클릭 시 신고완료